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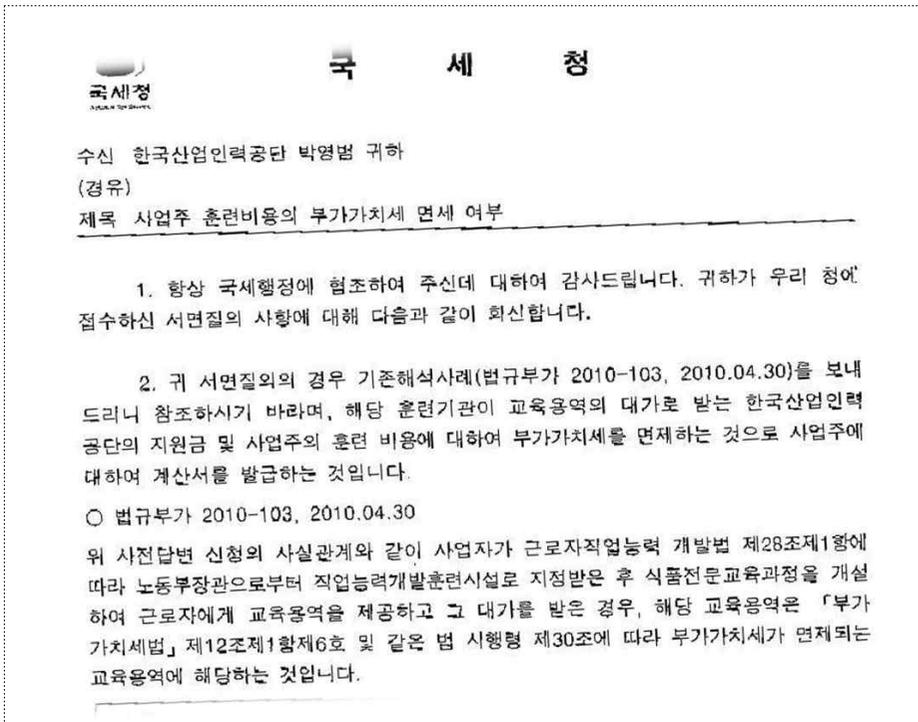
# 사업주 훈련 비용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

## 1 질의 및 국세청 답변사항

○ (질의)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'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'인 거래인지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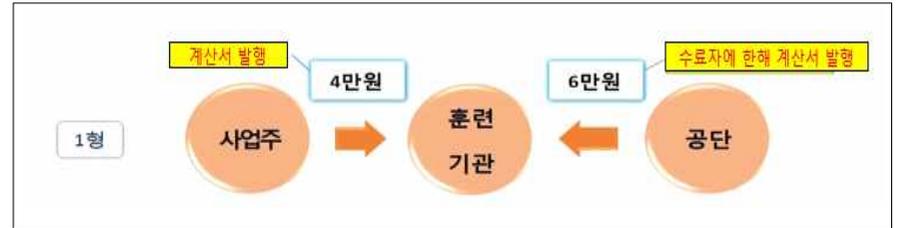
→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

< 국세청 답변 사항 >



## 2 국세청 답변에 따른 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사항

- 훈련기관 유형별 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사항
  - 훈련비 10만원 과정 진행시, 4만원은 사업주에게 수령하고, 지원금 6만원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



⇒ 훈련기관에서 사업주로 4만원(사업주의 훈련비용)에 대한 계산서 발행 및 수료자에 한해 공단 지원금 6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사업주로 발행